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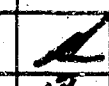

문서번호 법무 11010 - 136

시행일자 1996. 1. 25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 부 결 재

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		
법제 계 장			
기안	김구연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훈령안 1부. 끝.

훈령제 825 호

(제 2 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25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민원담당관

제목 훈령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6. 1. 31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25 호 (생략).

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6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조



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시민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무를 관련부서에서 책임있게 처리하여 신고인에게 신속·정확·친절하게 회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자치구직제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, 직제와 직위를 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관련부서의 직제 및 직위 명칭변경(안 제3조제1항, 제6조제2항, 제10조제2항, 제12조제1항2호나목, 제13조제1항 및 제2항)

- 기획감사과 → 감사실, 기획감사과장 → 감사실장

나. 관련부서의 직제 명칭 변경 및 분장 사무 조정으로 신고(상답)사항증 '중합민원실'로 이첩하는 조항 폐지(안 제4조제2항)

다. 관련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(안 제1호서식, 제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자치구직제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·제6조제2항·제12조제1항제2호나목·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
"기획감사과"를 "감사실"로 한다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4조(구술·전화에 의한 접수·처리) 신고인이 근무시간내 신고센터를 방문,
상담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도 처리한다.

제10조제2항중 "기획감사과장"을 "감사실장"으로 한다.

<제1호서식> 및 <제2호서식>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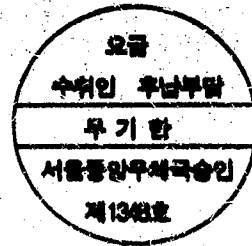
부

칙

이 훈령은 ~~공포~~^{발령}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>

시정통신엽서



보내는 사람

서울특별시 구 동

 번지 호 (전화 :)

시정통신엽서는 시민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겪고있는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 시민불편신고센터 : 731-6011~3

서울특별시장 귀하
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
 100 - 744

<별지 제2호서식>

시정통신신고처리결과

접수번호 :		년 월 일	
신고인	성명	전화번호	
	주소		
건명 :			
	처리내용이 복잡할 때 별지트 작성 활용		
담당부서	국(구)		과
	(문의전화 :)

현행	개정안
<p>제8조 (서면심의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교통수요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8조 (서면심의)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
<p>제13조(처리결과보고 및 통보)①처리 결과를 별첨 "시정통신 신고처리전" (별지 제2호서식)에 2부작성 국주무과 및 기획감사과에 보고한다.</p> <p>②국주무과 및 <u>기획감사과</u>에서는 "시정통신 신고처리전"(별지 제2호서식) 1부를 시민불편신고센터에 보고 한다.</p>	<p>제13조(처리결과보고 및 통보)① -- ----- ----- --- <u>감사실</u> ----- ② ----- <u>감사실</u> --- ----- ----- -----</p>